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기획재정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619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2 |
|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박용갑의원안) .... | 2 |



## I. 개요

### 1.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619호)

####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용갑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11. 15.
- (3) 회 부 일 : 2024. 11. 18.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일정 과세연도 동안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해당 감면 조항은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 촉진 및 고용 창출 효과가 있고, 경기 침체로 창업중소기업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관련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창업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6조).

## II. 주요 내용별 검토

###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박용갑의원안)

| 현행                                             |                   |                    |            |                            | 개정안                                               |                   |                    |            |                            |
|------------------------------------------------|-------------------|--------------------|------------|----------------------------|---------------------------------------------------|-------------------|--------------------|------------|----------------------------|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조)                       |                   |                    |            |                            | □ 적용기한 연장 및 신성장서비스업 우대감면 신설                       |                   |                    |            |                            |
| ○ 유형별 감면을                                      |                   |                    |            |                            | ○ 유형별 감면을                                         |                   |                    |            |                            |
| 구분                                             | 기본 감면             |                    |            | 추가 감면                      | 구분                                                | 기본 감면             |                    |            | 추가 감면                      |
|                                                | 수도권<br>과밀억제<br>권역 | 수도권<br>과밀억제권역<br>밖 |            |                            |                                                   | 수도권<br>과밀억제<br>권역 | 수도권<br>과밀억제권역<br>밖 |            |                            |
|                                                |                   | 수도권                | 수도권<br>밖 * |                            |                                                   |                   | 수도권                | 수도권<br>밖   |                            |
| 창업 중소기업                                        | -                 | 5년 25%             | 5년 50%     | 상시<br>근로자<br>증가율<br>× 100% | 창업 중소기업                                           | -                 | 5년<br>25%*         | 5년<br>50%* | 상시<br>근로자<br>증가율<br>× 100% |
| 청년·<br>생계형**                                   | 5년 50%            | 5년 75%             | 5년 100%    |                            | 청년·<br>생계형                                        | 5년 50%            | 5년 75%             | 5년 100%    |                            |
| 벤처기업                                           | 5년 50%            |                    |            |                            | 벤처기업                                              | 5년 50%*           |                    |            |                            |
| 에너지신기술<br>중소기업                                 | 5년 50%            |                    |            |                            | 에너지신기술<br>중소기업                                    | 5년 50%*           |                    |            |                            |
| 창업보육<br>센터사업자                                  | 5년 50%            |                    |            |                            | 창업보육<br>센터사업자                                     | 5년 50%            |                    |            |                            |
|                                                |                   |                    |            |                            |                                                   |                   |                    |            |                            |
|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                   |                    |            |                            | * 신성장 서비스업 우대감면 제도 재도입                            |                   |                    |            |                            |
| ** 생계형 창업지원 대상매출액 기준: 연 8,000만원 이하             |                   |                    |            |                            | ( ~2027. 12. 31.): 5년간 50% → 3년간 75%<br>+ 2년간 50% |                   |                    |            |                            |
| ○ 감면한도: 연간 5억원                                 |                   |                    |            |                            | ○ (현행과 같음)                                        |                   |                    |            |                            |
| ○ 적용기한: 2027. 12. 31.<br>(발의 당시 2024. 12. 31.) |                   |                    |            |                            | ○ 적용기한: 2028. 12. 31.                             |                   |                    |            |                            |

\* 박용갑의원안 2024. 11. 15. 발의(의안번호 5619)

☐ 개정안은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7년말에서 2028년말로 연장하는 한편, ② 2024년 이전에 창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 중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던 신성장 서비스업 우대감면 제도를 다시 도입하여 2027년 이전 창업 기업까지 우대공제율 적용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창업기업의 생존 및 창업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창업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창업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지 여부 및 기업 유형 등에 따라 최초 소득 발생 후 5년간 25~100%의 세액감면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또한,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전년대비 증가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증가율  $\times$  100%’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추가적으로 적용함.

동 제도는 1994년에 도입된 이후 기업의 형태(창업 보육, 벤처) 및 업종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신성장서비스업과 고용유발에 대한 감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되어 왔음.

또한, 지방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중소기업의 창업에 초점을 맞추되, 벤처·에너지신기술·창업보육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대상이 추가되었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주요 개정연혁]

| 개정연도  | 개정내용                                                                                         |
|-------|----------------------------------------------------------------------------------------------|
| 1994년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설                                                                               |
| 1998년 |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신설                                                                               |
| 1999년 | 일몰 신설(2003.12.31까지)                                                                          |
| 2004년 | 감면기간 축소(6년 → 4년), 일몰 연장(2006.12.31까지)                                                        |
| 2007년 | 일몰 연장(2009.12.31까지)                                                                          |
| 2010년 |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추가, 일몰 연장(2012.12.31까지)                                                          |
| 2013년 | 감면기간 연장(4년 → 5년), 업종 추가(사회복지 서비스업)<br>일몰 연장(2015.12.31까지)                                    |
| 2016년 | 일몰 연장(2018.12.31까지)                                                                          |
| 2017년 | 신성장서비스업 감면율 인상, 고용증가시 추가감면 적용 등                                                              |
| 2018년 | 청년·생계형 감면율 인상, 일몰 연장(2021. 12. 31까지)                                                         |
| 2019년 | 감면 대상 업종 변경                                                                                  |
| 2021년 | 생계형 창업기업 매출액 기준 연 4,800만원 → 연 8,000만원<br>일몰 연장(2024.12.31.까지)                                |
| 2024년 | 수도권 내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감면율 축소, 추가감면율 상향<br>감면한도(5억원) 설정<br>일몰 연장(2027.12.31.까지), 신성장서비스업 감면율 우대 종료 |

한편,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중 신성장 서비스업<sup>1)</sup>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본감면율을 5년간 50%에서 3년간 75%, 이후 2년간 50%로 상향하는 신성장 서비스업 우대감면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2024년말에 적용기한이 도래하였음.

또한, 2018년부터 청년창업 및 연 매출액 4,800만원 이하(2022년부터는 8,000만원 이하) 생계형 창업에 대해서 일반 창업중소기업에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관광숙박업 등

비해 감면율을 우대하여 적용 중임.

이후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①과밀억제권역 밖인 수도권 내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감면율을 25%p 축소하고,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율을 상향하며(고용증가율의 50% → 100%), ②감면한도를 연간 5억원으로 신규 설정하고, ③신성장서비스업 우대감면을 제외하고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였음.

[창업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내용]

| 구 분         |                        | 일반 창업      | 청년·생계형 창업   |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 -          | 5년간 50% 감면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수도권 위치                 | 5년간 25% 감면 | 5년간 75% 감면  |
|             |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위치 | 5년간 50% 감면 | 5년간 100% 감면 |

□ 개정안은 신성장서비스업 우대감면을 포함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8년말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첫째, 창업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자금이 부족한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가의 경제발전과 미래 성장을 고려할 때 창업을 권장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매년 창업기업이 증가하여 2022년 기준 전체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의 비중이 60.1%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창업 5년 이내 폐업률이 65.3%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

#### [창업기업 관련 현황(2020년~2022년)]

| 구분           | 기업 수(개)              |                      |                      | 종사자 수(명)             |                      |                      | 매출액(조원)            |                    |                    |
|--------------|----------------------|----------------------|----------------------|----------------------|----------------------|----------------------|--------------------|--------------------|--------------------|
|              | '20년                 | '21년                 | '22년                 | '20년                 | '21년                 | '22년                 | '20년               | '21년               | '22년               |
| 중소기업         | 7,286,082            | 7,713,885            | 8,042,726            | 17,791,939           | 18,492,614           | 18,956,294           | 2,674.6            | 3,017.1            | 3,309.0            |
| 창업기업<br>(비중) | 4,299,673<br>(59.0%) | 4,549,158<br>(59.0%) | 4,829,665<br>(60.1%) | 7,171,330<br>(40.3%) | 7,321,542<br>(39.6%) | 8,514,549<br>(44.9%) | 1,004.2<br>(37.5%) | 1,108.8<br>(36.8%) | 1,186.1<br>(35.8%) |

주: 창업기업이란 전국 17개 시·도 중소기업 중 소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의미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24년 조사), 2024. 12.

#### [2023년 기준 신생기업 생존율]

(단위: %)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
| 64.9 | 53.6 | 46.9 | 40.9 | 34.7 |

자료: 통계청, 2023년 기업생멸행정통계, 2024. 12.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발표한 '2022년 기준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업 시 필요한 소요자금은 평균 2.03억원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자금확보(50.3%)’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46.0%)’이나 ‘창업 지식·능력·경험 부족(34.7%)’ 등 보다 창업 의사결정에 있어 더 큰 장애요인으로 선정되었음.

둘째,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본 제도의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법인세 실효세율을 낮춰 기업의 법인의 사업소득과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적용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할 수 있을 것임.

셋째, 창업기업 지원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청년층의 사회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22년 말 기준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3.3만 개사는 전년 대비 8.1%(5.6만명) 늘어난 74.6만 명을 고용하여, 같은 기간 전체기업의 고용규모가 2.4%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그리고 같은 기간 전체기업의 청년 고용이 1.2% 감소한 것과 달리,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청년 고용은 3.6% 성장하였음.<sup>2)</sup>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세액감면의 특성상 소득이 큰 기업일수록 감면혜택이 증가하여 과세형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2)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고용증가율, 전체기업 대비 높아’, 2023.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일부 매출액 상한 등이 존재할 뿐  
과세연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의 생계형 창업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에게 매출액과 무관하게 유형별로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  
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특히 신성장 서비스업 우대감면의 경우 최초 3년간 75%의 감면율  
이 적용되어 5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청  
년창업중소기업 또는 생계형 창업중소기업보다 세제혜택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의 재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신성장 서비스업에 대한 우대감면 제도를 재도입할 경우 제  
조업 등 2차 산업이나 다른 서비스업에 대한 역차별이 지속되어  
업종 간 형평성이 저해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2017년 대비 2022년에 서비스업 창업감면액이 536% 증가하고 창  
업감면기업수가 302%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그간 서비스업 창업  
활성화의 목표가 일정 부분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세제  
지원의 지속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업 세액감면 변동 추이]

(단위: 억원, %)

| 구분      |      | 2017년 | 2022년  | 증가율 |
|---------|------|-------|--------|-----|
| 창업감면액   | 전체   | 810   | 1,672  | 106 |
|         | 서비스업 | 66    | 419    | 536 |
| 창업감면기업수 | 전체   | 5,090 | 10,080 | 98  |
|         | 서비스업 | 688   | 2,769  | 302 |

자료: 기획재정부

셋째, 「2024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신성장 서비스업 우대감면의 폐지 또는 감면 대상 업종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제시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넷째, 신성장 서비스업 우대 부분을 제외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경우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2027년말까지 적용기한이 연장되었으므로 2027년에 경제상황 및 관련 조세지출 규모 등 당시의 제반 사정과 제도 운영 성과, 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몰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
|--------------|
| 문 의 처        |
| 02)6788-5154 |